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9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신설	3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14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2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6. 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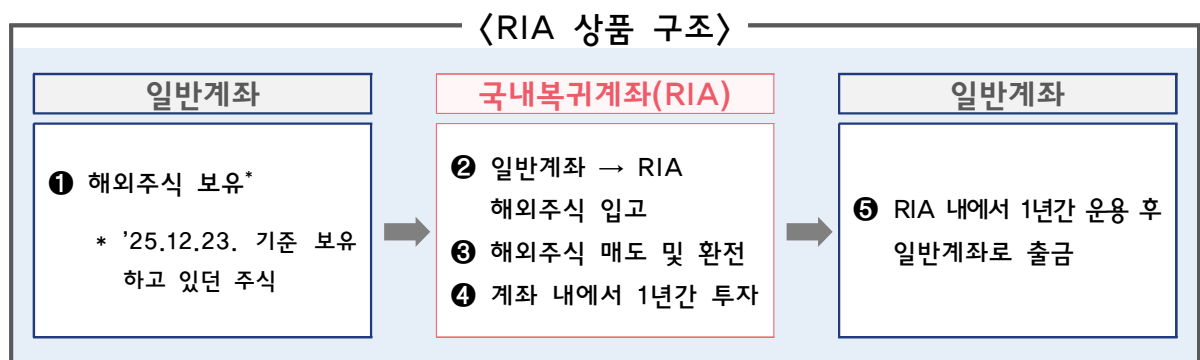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신설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과세특례(§91조의26) ○ 대상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 요건 1.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할 것 2. 양도하여 납입한 금액을 1년 이내에 인출한 사실이 없을 것 ○ 과세특례 -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① 2026. 3. 31.까지 매도: 100% 공제 ② 2026. 6. 30.까지 매도: 80% 공제 ③ 2026. 12. 31.까지 매도: 50% 공제 - 다만, 2026. 12. 31.까지 국외상장주식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조정 ○ 적용한도: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 <신 설>	☐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91조의27) ○ 과세특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해외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 공제한도: 500만원

* 정태호의원안 2026. 1. 23. 발의(의안번호 16294)

□ 개정안은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안 제91조의26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RIA 계좌”라 함)에 입고 후 ② 2026년에 매도 및 원화로 환전하고, ③ RIA 계좌에 1년간 유지하는 경우,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50%에서 100%까지) 공제¹⁾하려는 것임. 양도소득금액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임.



한편, 거주자가 RI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RIA 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1) ① 2026. 3. 31.까지 매도: 100% 공제, ② 2026. 6. 30.까지 매도: 80% 공제, ③ 2026. 12. 31.까지 매도: 50% 공제

〈해외주식 재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축소 산식〉

$$\circ \text{RIA 양도소득금액 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해외주식 순매수금액}}{\text{RIA 해외주식 매도금액}}^{**2} \right]$$

* RIA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복귀 시점별 가중치(50~100%)를 적용한 공제액

** 각각 해외주식 매수·매도 시점별 가중치(5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계산한 금액

*** 위의 가중치는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적용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안 제91조의27은 해외주식 보유 개인투자자가 2026년 중 환헛지 파생상품을 매입하고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환헛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 2) 국내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는 「소득세법」,
해외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상대국과의 금융 정보 교환을 통하여 거래내역 확인 가능

「소득세법」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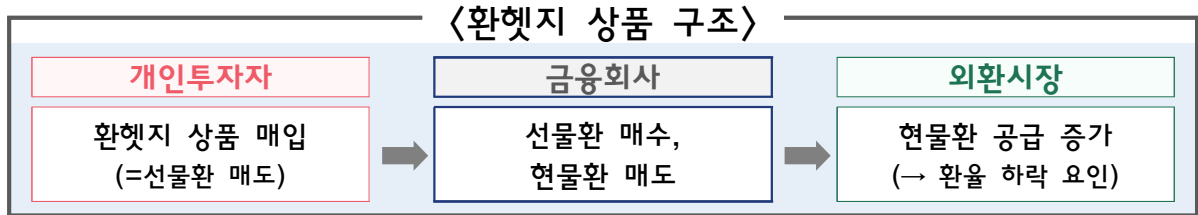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결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 [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결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개인투자자가 환헛지 파생상품(선물환 매도상품)을 매입하면, 이를 매수한 금융회사는 환위험을 헛지하기 위하여 현물환을 매도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즉각적으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환율 안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환헛지 상품 매입 시 세제 혜택〉

- (세제지원 대상) '25.12.23일 기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26년 中 환헛지 상품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 (소득공제 대상) '27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해외주식* 매매분
 - * '25.12.23일자 보유 해외주식에 한정 X, '26년 中 매매한 모든 주식 대상

두 제도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해외주식의 매각을 유인하여, 해외주식에 투입된 달러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세제지원 대상을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 보유자로 한정된 것은 정책 발표 이후 해외주식 매수 분은 제외하여 해외주식의 순매도 증가를 통해 외환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임.

□ 2025년 12월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³⁾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025년도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 자본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⁴⁾에도 그간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2025년 3분기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1조 562억달러로 전분기말(1조 304억달러)에 비해 258억달러 증가하였으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또한 1조 2,14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890억 달러가 증가함.

[대외금융자산·부채 현황⁵⁾]

(억달러)

	2024p		2025p			분기중 증감	거래 요인 ⁶⁾	비거래 요인 ⁷⁾
	3/4	4/4	1/4	2/4	3/4			
대외금융자산	25,277	25,126	25,168	26,818	27,976	1,158	570	587
(증권투자 ⁸⁾)	9,972	9,943	10,118	11,250	12,140	890	297	593
대외금융부채	15,527	14,105	14,328	16,514	17,414	900	236	663
(증권투자 ⁹⁾)	9,558	8,349	8,650	10,510	11,395	885	170	715
순대외금융자산	9,750	11,020	10,840	10,304	10,562	258	334	-76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2025.12.24.

4) 주요국 주식시장 연간수익률(YTD, %, '25.1.1~12.23): (韓 코스피)71.6 (韓 코스닥)35.6 (美 S&P500)17.2 (美 NASDAQ100)21.6 (EU Stoxx50)33.8 (日 NIKKEI)27.6 (中 상하이종합)21.9

5) 한국은행, 2025년도 3/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25.11.19.

6) 매매, 대출 등

7)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8) 거주자의 국외증권투자

9)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최근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가 달러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개인이 소유한 해외주식의 매각을 유도하여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달러 환율 추이¹⁰⁾]

(단위: 원)	‘24년	‘25.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1월	12월
평균환율	1,364.4	1,452.9	1,401.4	1,386.1	1,424.8	1,460.4	1,467.1

□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상향함으로써 해외주식에 투자된 달러 자산의 매각을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증가시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국내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20%(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RIA 계좌를 통해 2026년 중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환헷지 파생상품 또한 구매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10) 한국은행

한편, RIA 계좌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매도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 확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환율은 양국의 구매력, 통화량 증가율, 금리 격차 등 복합적 거시경제 지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시적인 과세특례는 단기적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특례 기한 종료 후 재차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외환 수요가 급증하는 자금 재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한편,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사례가 있음.

구분	RI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특례대상	해외상장주식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요건	해외주식('25.12.23. 기준 보유 주식)을 RIA를 통해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1년간 계좌 내에서 운용	전용저축 계약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만기일 전에 환매 필요
특례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공제 (양도시점별 50~100%)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매도금액 5천만원	납입금액 3천만원

둘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개인투자자 우회 거래 및 ‘환헷지 파생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당초 의도한 외환 유입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RIA 계좌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다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그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 간 증여(① 해외주식 판매 ⇒ ② 판매 대금 배우자 증여¹¹⁾ ⇒ 배우자 명의 해외주식 매입), 해외 계좌¹²⁾를 통한 해외 주식 매입 등 우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목표했던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한편, 환헷지 파생상품의 경우 4월 초 출시를 목표로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추진 중이나, 통상적인 상품 개발 절차¹³⁾를 고려할 때 목표 시점 출시 여부가 불확실하며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11)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 10년간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2)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개설한 계좌로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등

13) 재정경제부는 증권사에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나, 정책 금융상품의 경우 각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임.

셋째, 거시경제 관점에서 국제 자본 이동은 양국 간 금리격차 및 증시 기대수익률(한국 증시 기대수익률 및 미국 증시 양도차익 과세 후 기대수익률) 격차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세특례는 단기적 수급 조절 효과에 국한될 수 있음.

미국 증시 기대수익률이 한국 증시 기대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계기로 국내에 유입된 자금이 특례기한 종료 후 해외로 재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특례 운영 기간 중에도 기대수익률 격차가 유지되는 경우 정책 유인 효과가 제한되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환율	1207.7	1070.5	1115.7	1156.4	1086.3	1188.8	1264.5	1288.0	1472.5	1439.0

자료: 통계청, 종가기준

[대한민국 및 미국 기준금리]

(단위: %, 12.31.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2016년	1.25	0.75
2017년	1.50	1.50
2018년	1.75	2.50
2019년	1.25	1.75
2020년	0.50	0.25
2021년	1.00	0.25
2022년	3.25	4.50
2023년	3.50	5.50
2024년	3.00	4.50
2025년	2.50	3.75

주: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자료: 한국은행 및 FED 재구성

[한국 및 미국 증시 수익률 비교]

(단위: %)

구분	코스피	S&P 500
2016년	3.3	9.5
2017년	21.8	19.4
2018년	△-17.3	△6.2
2019년	7.7	28.9
2020년	30.8	16.3
2021년	3.6	26.9
2022년	△24.9	△19.4
2023년	18.7	24.2
2024년	△9.6	23.3
2025년	75.6	16.4

주: 수익률은 코스피 및 S&P500 연말 종가 기준으로 산출

넷째,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법률에 비과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환헷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공제금액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연평균 투자액의 5%(공제한도: 500만원)로서, 연평균 투자액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해외 주식 보유 가액으로 설명하고 있음¹⁴⁾. 그런데, 법률에 ‘2025년 12월 23일 해외 주식 보유 가액’을 투자액 한도로 설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동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의 본질적 부분을 포괄 위임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비과세 요건으로 ‘2025년 12월 23

14) 2025년 12월 23일 기준 투자자 보유 해외주식 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2026년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연평균 투자액이 1억원이더라도 100만원으로 간주하여 5만원(=100만원*5%)만 소득공제 가능

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할 것'을 규정한 것처럼 법률에 비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0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23) ○ (익금불산입률 상향 대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16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 100% ○ (차입금 이자의 익금 불산입 제외) 해당 사업연도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 ○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6. 1. 23. 발의(의안번호 16294)

☐ 개정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¹⁵⁾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해 종전 95%에서 100%로 상향하려는 것임.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에는 해외소득면세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15)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 경우 종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따르다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소득면세방식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해외소득면세방식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중 우리나라·미국·일본 등 34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①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② 국내소득에 합산되어 자국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스라엘 등 OECD 4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타국 기업과 동일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국내 투자소득이든 해외 투자소득이든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해외소득면세방식의 비교]

구분	해외소득면세방식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중전)
개념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해외소득은 현지세율 적용)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해외소득도 국내세율 적용)
도입국가 (OECD)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34개국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콜롬비아

□ 현행법은 ①(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¹⁶⁾과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16)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17)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18)
에 대하여,

②(외국자회사 요건)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배당기
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19)

③(익금불산입률) 해당 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면세)하고,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
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
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8) 「법인세법」에서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을 원칙적으로 익
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해당 내국법인의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뿐
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4)도 포함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
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
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
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국외원
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모회사에서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을 것임.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비
용부분을 익금불산입하면 이중혜택이 발생하게 됨. 그러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5% 상당액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료됨.

④(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²¹⁾ 특정외국법인²²⁾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및 배당 간주를 적용받은 수입배당금액,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수입배당금액²³⁾, 혼성금융상품²⁴⁾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21)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가. 도매업
 - 나. 금융 및 보험업
 - 다. 부동산업
 -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 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23) 「법인세법 시행령」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2026년에 한정하여 현행 95%의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익금불산입률이 상향될 경우, 익금불산입을 통한 법인세 부담 감소로 기업이 종전 해외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추가적으로 배당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함. 실제로, 동 제도 신설 직후인 2023년에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재투자수익수입)²⁵⁾은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해외유보금 중 국내로 배당된 ‘리쇼어링(자본 유턴)’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자본 규모는 442억 5,500만달러였음. 이는 배당·환류 유인을 강화하여 해외유보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보임.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5) 한국 기업이 지분(10% 이상)을 가진 해외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서 투자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재투자수익수입)]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투자 수익수입	6,074.7	5,867.1	7,586.7	16,579.2	15,157.2	-11,527.6	7,798.2
직접투자 일반배당 수입	5,755.9	9,733.0	5,509.9	13,313.8	14,414.7	44,255.0	21,280.7

자료: 한국은행

위와 같이 국내로 환류된 해외자금은 국내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 등으로 재투입될 여지가 있어, 국내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둘째,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해외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가 증가할 경우 배당소득이 증가하고, 이 경우 국내 외환부문 및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²⁶⁾

실제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본원소득수지²⁷⁾는 2023년 1월 21억 3,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억 2,300만달러만큼 증가하였고, 그 중 투자소득배당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11억 3,400만달러만큼 증가하여 3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전 3년간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⁸⁾

26) 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가 배경 및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3.06.07.

27) 국가 간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국제수지 계정으로, 금료 및 임금 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 그 중 투자소득수지는 배당금,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을 계상하며 이를 각각 (투자소득)배당수입-지급 및 (투자소득)이자수입-지급으로 명명

2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국제수지표 (2026년 2월 검색 기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취배당액 중 비용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에 대해 중복된 세제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 2022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당시 익금불산입률을 95%로 설정한 것은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국외원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²⁹⁾ 이에 개정안과 같이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할 경우 기존에 비용처리 되어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이중적인 세제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³⁰⁾ 차입이자 외에도 국외 출자 시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비용, 외화차입 수수료, 그 밖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발생에 상응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의 경우 손금 산입으로 인한 세제상 이익에 더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00% 적용에 따른 중복 세제지원의 소지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에의 일감 몰아주기

29)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국외원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모회사에서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을 것임.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비용부분을 익금불산입하면 이중혜택이 발생하게 됨. 그러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 상당액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실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29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서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저세율소재지 해외자회사에 일감·수익을 몰아주고, 현지에서 과세를 최소화한뒤 일부를 배당 형태로 국내에 환류하는 방식이 확산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³¹⁾

이에 개정안과 같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할 경우 저세율 소재지 해외자회사로의 거래·이익의 이전 유인이 강화될 수 있음.³²⁾

□ 참고로, 해외소득면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일본의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같이 95%의 익금불산입률³³⁾을 적용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31) 이것에 대해서 실제 이 제도에 대한 논쟁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달리 이걸 도입하니까 그에 따른 행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행태 변화라는 것은 국내 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해외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해외 자회사에 수익 몰아주기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국내로 환류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행태적인 평가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다면 그걸 감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행태의 변화 속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거냐에 대한……,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 (2025.11.18.)

32) Peter Egger(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후 자회사 소재국의 자본지출과 고정자산 투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유 교수는 “국외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소득이전(조세회피)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저세율국가에 소재하는 외국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방지 규정 강화해야”, 2025.8.22. 한국세정신문

33) この費用の額に相当する金額とは、具体的にはその剰余金の配当等の額の5%相当額とされていますので(法人税法施行令22條の4②)、結果的に剰余金の配当等の額の95%に相当する金額が益金不算入となります。이 비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구체적으로는 그 잉여금배당 등 금액의 5% 상당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결과적으로 잉여금배당 등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 됨.

PWC <https://www.pwc.com/jp/ja/knowledge/glossary/dividend-from-foreign-subsidiary-company.html>